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21.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02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
- 나. 상정의결
-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9. 18.)
“심사보류”
 -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9. 21.)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김희주)

- 가.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관내 우수 스타트업을 중점 발굴, 육성 및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위한 『강남구 창업펀드』 조성과 관련하여 펀드출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상위 근거법령(「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명시(안 제1조)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계정별 자원조성 구분 및 투자계정 자원조성 방법 추가(안 제3조)

- 계정별 기금 용도 구분 및 투자계정 기금 용도 추가(안 제4조)
- 계정별 기금의 운용·관리 조항 신설 및 계정별 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 구분 (안 제5조)
- 계정별로 위원회를 구성·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6조)
- 제5조 개정에 따른 항 정정(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예산조치 : 2021년 예산에 5억원 반영예정
- 합 의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와 합의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2020. 8. 24.~ 9. 3.) 결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시티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미래 먹거리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융자중심에서 펀드투자와 병행하는 방향으로 시대적 흐름이 변화하고 있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임.

-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시, 성남시, 부천시 등에서는 유망 청년기업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에 필요한 재정투자인 펀드의 출자액이 증가하고 있음. 우리 구는 전국(5.2%)에서 가장 많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바 벤처의 산실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창업에서 본격적인 시장 개척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단계에 위치한 혁신형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초기 창업기업인 스타트업은 코스닥 상장과 인수·합병(M&A) 같은 것을 통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에 있음. 즉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잠재력과 성장의 가능성 등을 갖추고 있는 기술중심의 회사를 의미한다고 이해됨.

- 한편, 펀드에 출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살펴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¹⁾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는 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1조제4항²⁾에 따라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성장 동력인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기존의 융자중심의 지원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펀드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출자에 따른 근거법령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법」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의2(계정간의 부분)의 신설규정은 기금의 계정을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기금을 명확히 운용하기 위한 것임. 다만, 계정 구분의 필요성, 장·단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안 제3조(기금의 조성)에서는 기금 구분에 따라 각 계정 조성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1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출연금’ 보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회계의 전입금’³⁾으로 규정하는 것이 예산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제3호 중 ‘그 밖에 출자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등’은 제4호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안 제4조(기금의 용도)제2항은 신설규정으로 보이나 제1호 중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1조제4항과 관련이 없는 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제2항제2호 중 ‘펀드투자계정’은 ‘투자계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제1항 중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는 규정은 제2조의2 규정과 중복되는 조문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2항의 신설규정 중 ‘지원계획’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의 조문은 투자계정에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3항의 개정규정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각 계정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 및 기금운용 특성상 바람직한 운용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계정별’로 구성·운영하되 각 ‘계정별’로 위원장과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4)에서는 ‘기금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법률에 부합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제4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금출납원을 ‘계정별 업무 담당팀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5)에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

3) 제3조제1항제1호 연계 개정 필요(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출연금)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납원을 두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바 조례안이 해당 법령에 부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됨. 아울러 제1항의 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은행에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15.7.24. 개정⁶⁾되면서 기금의 위탁 규정이 삭제되었는 바 조문정비⁷⁾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펀드투자의 경우 손실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어, 손실 시 주민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성격상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 물론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담보되어 있으나, 기존 육성기금의 경우 담보 없이 스타트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면이 있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됨. 우수한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없어 창업하지 못하는 인재들을 위해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위축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역 인재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법률 제13428호, 2015. 7. 24, 일부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7) ⇒ 제8조(금고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기금을 예치·관리하는 은행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 연계개정 필요)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02호

제안일자 : 2020.9.21.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예산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근거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관련법과 관련 없는 조항은 삭제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예산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 및 기금 조성 관련 투자계정 재원 성격에 맞게 조문 분리(안 제2조)
- 불필요한 자구 수정(안 제4조제1항)
- 중복 조문 삭제 및 기금 운용 특성에 맞게 조문 수정(안 제5조)
-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사위원회 심의를 위한 근거 조문 신설(안 제6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8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출연금”을 각각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를 “그 밖의”로 한다.

3.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안 제4조제2항제1호 중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출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펀드투자계정”을 “투자계정”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를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계획”을 “기금운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기금출납원은 계정별 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는 계정별로 구성·운영하되, 각 계정별로” 를 “위원회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계정별” 을 “해당” 으로 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금고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기금을 예치·관리하는 은행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3조(기금의 조성) <u>기금</u>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u>출연금</u></p> <p>2. <u>기금</u>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p> <p>3. 그 밖의 용자상환금 등</p> <p><신 설></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u>용자계정</u>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u>출연금</u></p> <p>2. <u>용자계정</u>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p> <p>3. (현행과 같음)</p> <p>② <u>투자계정</u>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u>출연금</u></p> <p>2. <u>출자기금</u>의 회수금</p> <p>3. <u>투자계정</u>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u>출자기금</u> 조성을 위한 수입금 등</p> <p><신 설></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개정안과 같음)</p> <p>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u>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u></p> <p>2. (개정안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u>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u></p> <p>2. (개정안과 같음)</p> <p>3. <u>투자계정</u>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p> <p>4. 그 밖의 <u>출자기금</u> 조성을 위한 수입금 등</p>
<p>제4조(기금의 용도) <u>기금</u>은 다음 각 호의 용도</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u>용자계정</u>은 다음 각 호</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개정안과 같음)</p>

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4. 그 밖에 저소득층의 창업을 위한 지원 등

<신 설>

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펀드투자계정 운용 ·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 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로 관리한다.

<신 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제5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 관리하며,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일자리정책과장으로

2. 투자계정 운용 ·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 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로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생략)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로 한다. 기금출납원은 계정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용자대상자의 선정

4. 용자액의 결정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⑤ ~ ⑦ (생략)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서 기금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용자대상자의 선정

4. 용자액의 결정

<신설>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계정별로 구성·운용하되, 각 계정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계정별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서 기금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용자대상자의 선정

4. 용자액의 결정

4의2.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금고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기금을 예치·관리하는 은행

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
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
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2
----------	-----

제출년월일 : 2020. 9. 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지역경제과

1.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관내 우수 스타트업을 중점 발굴, 육성 및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위한 『강남구 창업펀드』 조성과 관련하여 펀드출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 근거법령(「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명시(안 제1조)
- 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다. 계정별 재원조성 구분 및 투자계정 재원조성 방법 추가(안 제3조)
- 라. 계정별 기금 용도 구분 및 투자계정 기금 용도 추가(안 제4조)
- 마. 계정별 기금의 운용·관리 조항 신설 및 계정별 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 구분(안 제5조)
- 바. 계정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6조)
- 사. 제5조 개정에 따른 항 정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에 5억원 반영예정

다. 합 의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와 합의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20. 8. 14. ~ 2020. 9. 3.)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2조의17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62조의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계정 간의 구분) 제2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용자계정
2. 투자계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용자계정의 재원”으로,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금”을 “용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출연금

2. 출자기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출자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등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용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펀드투자계정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제1항 중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를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단서 중 “하여 처리하게”를 “하여금 처리하게”로 한다.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기금출납원은 계정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계정별로 구성·운영하되, 각 계정별로”로,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u>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 ----- 제62조의17,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및 「<u>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u>」----- ----- ----- ----- -----.</p> <p>제2조(기금의 설치) <u>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제2조의2(계정 간의 구분) 제2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융자계정</u> 2. <u>투자계정</u>
<p>제3조(기금의 조성) <u>기금은 다음</u></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u>융자계정</u></p>

현행	개정안
<p>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생략) <p><신설></p>	<p>의 재원-----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용자계정----- (현행과 같음) <p>② 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출연금 출자기금의 회수금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출자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등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 4. (생략) <p><신설></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용자계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 4. (현행과 같음) <p>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펀드투자계정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현행	개정안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u>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u></p> <p><u><신설></u></p> <p>② <u>기금운용관은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u>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u>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u></p> <p>③·④ (생략)</p> <p>⑤ <u>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u></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 ----- <u>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u></p> <p>② <u>구청장은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u></p> <p>③ <u>기금의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u> 기금출납원은 계정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 ----- ----- ----- ----- ----- <u>하여금 처리하게</u> ----- -----.</p> <p>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⑥ <u>제5항</u>-----</p>

현행	개정안
<p>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u>위원으로</u> 구성한다.</p> <p>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기업지원팀장</u>이 된다.</p> <p>⑤ ~ ⑦ (생략)</p> <p>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u>제5조제4항</u>에 따라서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p> <p>제6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회는 계정별로 구성·운용</u>하되, 각 <u>계정별로</u> ----- <u>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u> 구성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계정별 업무 담당팀장</u>--.</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 <u>제5조제5항</u>----- ----- ----- ----- -----.</p>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기금 출자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

2. 비용추계의 전제

- 출자규모 : 1,000,000천원(총 펀드규모는 민간자금 결성액에 따라 확정)
- 운용기간 : 8년(투자 4년 + 회수 4년)
- 투자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입	중소기업육성기금	-	-	-	-	-	-
세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500,000	200,000	200,000	100,000	-	1,000,000
총 비용		-500,000	-200,000	-200,000	-100,000	-	-1,0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금		500,000	200,000	200,000	100,000	-	1,000,000
합계		500,000	200,000	200,000	100,000	-	1,000,000

5. 덧붙이는 의견

- 총 펀드규모는 민간자금 결성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회수금(투자수익)은 5차연도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당해 펀드수익률 및 강남구 출자비율 등에 의거 결정될 수 있음

6.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강아인(02-3423-5599)